

파주운정신도시(3지구) A46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(주)파주운정46피에프브이(대표자 박양준외1) 외 1인이 신청한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46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4. 17.

파 주 시 장

1. 사업계획 변경승인 현황

가. 사업명: 파주운정신도시3지구 A4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

나. 사업주체: (주)파주운정46피에프브이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) 외1인

다. 사업위치: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15-13번지 일원 [파주운정3지구 A46BL]

라. 사업내역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대지면적(m ²)	24,509.0000	24,499.0268
건축면적(m ²)	3,106.3037	3,118.5062
연 면 적(m ²)	67,446.8747	67,481.5889
층 수	지상28층 / 지하2층	좌 동
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좌 동
동 수	공동주택 4개동, 부속건축물 11개동	좌 동
세 대 수	383세대	좌 동
사 업 비	211,520,313천원	좌 동
기타 변경	- 대지면적 증가(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 면적반영)	

마. 세대 및 실당 규모 사업내역(변경없음)

형별구분 (공동주택)	공급면적(m ²)			세대수
	전용면적	공용면적	계	
84A	84.92	25.62	110.54	190
84B	84.99	27.34	112.33	96
84C	84.93	28.23	113.16	97

2.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

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(m ²)				토지소유자
			계(m ²)	주택부지(m ²)	도로부지(m ²)	제외부지(m ²)	
계			24,499.0268	24,499.0268	0	0	
경기도파주 운정3	146블럭 (A46BL)	대	24,499.0268	24,499.0268	0	0	주택도시 보증공사

3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: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4. 기타: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. 끝.